

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70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9. 6.

발 의 자 : 김영길 의원의 께

1. 개정이유

- 공동주택 단지내의 주거용건물에 대한 유지·보수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 입주민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공용시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그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보조금 대상 적용범위 단서 신설(안 제4조)
 - 영리목적의 임대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보조금 적용범위에서 제외함
- 보조금 지원대상 구체화(안 제5조)
 - 공동주택의 주거용건물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의 내용을 구체화 함

3. 근거법규

- 주택법 제43조제8항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공동주택 이라 함”을 “공동주택 이란”으로 한다.

제4조에 “「법」”을 “법”으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영리목적의 임대주택(사원임대 포함)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·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설물”을 “공용시설물”이라 하고, 같은 조 제1호, 제2호, 제5호,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단지안 주도로, 보도, 주차장의 유지·보수
2.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·보수 및 준설
5. 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, 경로당 유지·보수
6.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보수

제5조제1항 중 제7호,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·보수
8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건물 외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

제7조제1항 중 “ [별지] 서식의”를 “별지 서식의”로 하고, “보조 신청서”를 “보조금 신청서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보조 신청서”를 “보조금 신청서”로 하고,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0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“공동주택”이라 함 「주택법」</u>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 2조제2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.</p> <p>2.(생략)</p> <p>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 지역 안에 「<u>법</u>」 과 「<u>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</u>」 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.</p> <p>제5조(지원대상) ①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공동주택 단지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<u>시설물</u>에 한한다.</p> <p>1. <u>단지안 주도로의 유지·보수</u></p> <p>2. <u>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·보수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5. <u>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·보수</u></p> <p>6. <u>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</u></p> <p>제7조(보조방법 및 신청)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<u>별지 서식의</u>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(이하 “<u>보조 신청서</u>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 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보조 신청서</u>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<u>제9조의 규정에 의한</u>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와 보조 규모를 결정하고,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<u>“공동주택”이란</u>----- ----- 2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<u>법</u>----- ----- <u>다</u> <u>만, 영리목적의 임대주택 사원임대 포함) 및 「도</u> <u>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·고시된 지역안의 공동</u> <u>주택은 제외한다.</u></p> <p>제5조(지원대상) ①----- ----- <u>공용시설물</u>----- 1. <u>단지안 주도로, 보도, 주차장의 유지·보수</u> 2. <u>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·보수 및 준설</u> 3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, 경로당 유지·보수</u> 6. <u>차진거 주차장 설치 및 보수</u> 7. <u>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·보수</u> 8. <u>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</u></p> <p>제7조(보조방법 및 신청) ①----- ----- <u>별지 서식의</u> ----- ----- <u>보조금 신청서</u> ----- ----- 1. ~ 6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<u>보조금 신청서</u> ----- ----- <u>제10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④(현행과 같음)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705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6. 29(월)
- 나. 제출자 : 김영길 의원외 3명
- 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7. 2(목)
- 라. 위원회 상정 : 2009. 7. 22(수)

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영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 단지내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유지·보수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 입주민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공용시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그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보조금 대상 적용범위 단서 신설(안 제4조)
 - 영리목적의 임대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 받는 공동주택은 보조금 적용범위에서 제외함
- 보조금 지원대상 구체화(안 제5조)
 -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의 내용을 구체화 함

4. 근거법규 : 주택법 제43조제8항

5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성낙팔)

-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
-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, 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주택, 사원임대주택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항과
- 지원대상을 사유재산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은 제외하고, 단지내 주차장, 경로당 등의 공용시설물을 추가 삽입으로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, 그 외 인용조문 및 자구 수정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